

서울特別市麻浦國家有功者團體에 대한區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案)

1. 提案理由

地方稅法施行令第79條에서 非營利事業者로 규정한 國家有功者 등 團體設立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區稅의 課稅 免除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 國家有功者 團體는 현재 地方稅 課稅免除 對象이나 계속 減免의 필요로 '91. 地方稅法 施行令 개정시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전환.
- 國家有功者 團體가 固有事業 運營資金 마련을 目的으로 貸貸業등 受益事業에 사용하는 不動產에 대하여는 課稅免除.
- 地方稅中 시세는 取得稅와 登錄稅, 區稅는 財產稅와 綜合土地稅를 課稅免除 戰歿軍警未亡人會, 光復會, 4·19依據傷痍者會, 4·19依據犧牲者遺族會, 재일學徒義勇軍同志會, 大韓武功受勳者會등
- 課稅免除을 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區廳長이 課稅免除 대상임을 알수 있을때에는 직권으로 課稅免除 할수 있도록 함.
-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적용시한을 1994年 12月 31日까지로 함.

2. 關聯法規

- 地方稅法第7條(公益等 사유로 인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① 地方自治團體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地方稅法第9條(課稅免除 등을 위한 條例) 第7條 및 第8條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 不均一課稅 또는一部課稅를 하고자 할때에는 内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2. 内務部長官 허가 및 서울特別市 準則 示達

地方稅法第9條의 규정에 의거 國家有功者團體에 대한 減免條例準則 示達로 内務部長官 許可(근거: 内務部稅制 22670-12746號,)

91.12.31자), 서울特別市長 示達(근거: 세정 22670-29號, '91.1.9자)

3. 豫算事項

別途措置 필요 없음.

서울特別市麻浦區國家有功者團體에 대한區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案)

第1條(目的) 이 조례는 地方稅法施行令第79條에서 非營利事業者로 규정한 國家有功者 등 團體設立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地方稅法第7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區稅의 課稅免除에 관한 事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免除對象) 第1條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貸貸, 기타 受益事業에 활용하기 위하여 取得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財產稅·綜合土地稅를 免除한다.

第3條(免除申請) ① 이 條例의 규정에 의하여 課稅免除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갖추어 區廳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區廳長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區廳長이 課稅免除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課稅免除할 수 있다.

第4條(施行規則) 이 條例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適用時限) 이 條例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年 12月 31日까지 적용한다.

서울特別市麻浦區都市ガス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

1. 改正理由

基金의 管理에 관하여 區廳長이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있으나 地方財政法 第57條의 규정에서 支出機管(命令機管)과 出納